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6 선고 2020가단5177256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고1. B

2. 한국토지주택공사

변론 종결2020. 9. 22.

판결 선고2020. 10. 6.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5,738,939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23.부터 2020. 2. 21.까지는 연 6%, 2020. 2. 22.부터 2020. 7. 10.까지는 연 7.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제1항 기재 돈을 한도로, 48,053,000원에서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피고들 사이의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 B에 대하여 갚는 임대료, 관리비 등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8호증(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① 피고 B는 원고에게 구상금 35,738,939원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20. 1. 23.부터 2020. 2. 21.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6%, 2020. 2. 22.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인 2020. 7. 10.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7.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B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③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①항 기재 돈을 한도로, 48,053,000원에서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피고들 사이의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 B에 대하여 갖는 임대료, 관리비 등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정철

별지